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22
----------	-------

발의연월일 : 2023. 12. 1.

발 의 자 : 권명호 · 강기훈 · 구자근
김용판 · 김희국 · 박대수
안병길 · 이주환 · 이태규
정우택 · 지성호 · 최영희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 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의 작성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u><신설></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의 작성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 <u>. 1. ~ 10. (현행과 같음)</u> <u>10의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u>

11. · 12. (생략) ② ~ ⑤ (생략)	<u>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 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u>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